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브릭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20.12.08(화)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결산
- 종류 A(E), P1, P2, Pe1, Pe2, S(P)1, S(P)2 수익증권 신설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3등급→2등급)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문구 반영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0.04.30 기준	2020.09.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11.18 기준	2020.11.18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11.10 기준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0.04.30 기준	2020.09.29 기준
투자실적추이	2019.11.18 기준	2020.11.18 기준
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11.10 기준
제 1 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A(E)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종류(Class) 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2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Pe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e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설>	-종류(Class) A(E)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종류(Class) 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2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Pe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e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11.10 기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Class) A(E)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종류(Class) 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2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Pe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e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에 관한 사항] 가.운용전문인력	2020.04.27 기준	2020.11.18 기준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 대상(투자대상의 종류/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	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일반위험 유동화 자산 투자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 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1.75%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16.69% 으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2 등급(높은 위험) 으로 분류됩니다
- 위험등급 변경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2 등급(높은 위험)
11.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 가 적용 기준 (2)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종류(Class) A(E)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종류(Class) P1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2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Pe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퇴직연금) -종류(Class) Pe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개인연금) -종류(Class) S(P)1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종류(Class) S(P)2 수익증권 추가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환매 (5)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u>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u>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19.11.18 기준	2020.11.18 기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과세 (2)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13 기(2019.11.18) 기준	제 14 기(2020.11.18) 기준
제4부.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회사의개요	-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우리펀드서비스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8.12.31 기준	2019.12.31 기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 규모	2019.11.18 기준	2020.11.10 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수익자총회 등 (4)반대매수청구권	-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생략> 9.“예탁결제원”이라 함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10.~11. <생략>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8. <현행과 동일> 9. <삭제> 10.~11. <현행과 동일>
제 3 조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1.<생략> 12.~18.<신설> ④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1.<현행과 동일> 12. Class A(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3. Class P1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14. Class P2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p>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15. Class Pe1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p> <p>16. Class Pe2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p> <p>17. Class S(P)1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18. Class S(P)2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④ <현행과 동일></p>
제 9 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제 10 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 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전자등

	<p>1.~11.<생략> 12.~18<신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이하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한 때에 법 제309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생략></p>	<p>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11.<현행과 동일> 12. Class A(E) 수익증권 13. Class P1 수익증권 14. Class P2 수익증권 15. Class Pe1 수익증권 16. Class Pe2 수익증권 17. Class S(P)1 수익증권 18. Class S(P)2 수익증권</p> <p>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 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p>③ <삭제>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현행과 동일></p>
<p>제 11 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 12 조 (수익증권의 재교부)</p>	<p>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당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 13 조 (수익증권의 양도)</p>	<p>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제 14 조 (수익자명부)</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위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위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p>

	<p>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실질수익자명부에는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는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 <생략></p>	<p>다.</p> <p>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p> <p>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p> <p>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p> <p>⑧ <현행과 동일></p>
<p>제 15 조 (자산운용지시 등)</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생략></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현행과 동일></p>
<p>제 17 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② <생략></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 22 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p>	<p>①~② <생략></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 제</p>

	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생략>	268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현행과 동일>
제 24 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생략> ②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현행과 동일> ② 고객 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고객 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 (환매업무)	①~③ <생략>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삭제> ⑤ <삭제> ⑥~⑦ <현행과 동일> ⑧ <삭제>
제 27 조 (환매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35 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② <생략>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② <현행과 동일>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 (반대수익자의 매수 청구권)	①~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6조 및 제27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

	<p>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로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p> <p>④ <삭제></p>
<p>제 39 조 (보수)</p>	<p>①~② <생략> ③ 1.~11.<생략> 12.~ 18.<신설></p>	<p>①~② <현행과 동일> ③ 1.~11.<현행과 동일> 12.~18.<신설 1></p>
<p>제 40 조 (판매수수료)</p>	<p>① <생략>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 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생략> 2.<신설></p>	<p>① <현행과 동일>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 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현행과 동일> 2. Class A(E) 수익증권: 100분의 0.6</p>
<p>제 44 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③ <생략> ④~⑥ <신설></p>	<p>①~③ <현행과 동일> ④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3항의 자투자신탁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관련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에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변경시행일 전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p>

		<p>순자산 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p> <p>2. 대상기간 :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p> <p>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제4항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법 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제 45 조 (투자신탁의 해지)	<p>①~③ <생략></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p>①~③ <현행과 동일></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제 49 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제 47 조 (투자신탁의 합병)	<p>①~④ <생략></p> <p>⑤집합투자업자는 제4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①~④ <현행과 동일></p> <p>⑤집합투자업자는 제 4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p>
제 48 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 등)	<p>① <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소각</p> <p>2.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① <현행과 동일></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p> <p>1.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p> <p>2.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제 49 조 (공시 및 보고서 등)	<p>①~⑧ <생략></p> <p>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p>	<p>①~⑧ <현행과 동일></p> <p>⑨ 제 7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이하 이 항에서"보고서"라 한다)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p>

	<p>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특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제 51 조 (수익증권의통장거래)</p>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신설1>

<p>12. Class A(E) 수익증권 <신설 2020.12.08></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13. Class P1 수익증권 <신설 2020.12.08></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3</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14. Class P2 수익증권 <신설 2020.12.08></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15. Class Pe1 수익증권 <신설 2020.12.08></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p> <p>16. Class Pe2 수익증권 <신설 2020.12.08></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p>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1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

17. Class S(P)1 수익증권 <신설 2020.12.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

18. Class S(P)2 수익증권 <신설 2020.12.08>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9.0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2